

# 環境과 開發과의 관계

- 經濟学的 측면에서 본 環境資源의 效率적 利用방안 -

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실  
김동희

## 제 1 장 서 론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는 物理學, 工學生物學, 經濟學, 社會學 등 많은 관련 학문의 종합적 접근으로서 가능하나 여기서는 경제학적인 측면에 국한하여 환경문제를 分析고자 하였다.

경제학에서 환경과 개발의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效率(efficiency)'과 '衡平(equity)'이 '길잡이 별'의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제적 效率性과 衡平은 相衝하는 경우가 많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도例外가 아니다. 다만 모두가 이전보다 나빠지는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에서도 效率에 관한 論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效率이 지표가 되어야 한다.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效率적인 개발방안이란 異部門間, 또한 異時間에 자원을 效率적으로 配分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환경이 無料財(free goods)에서 經濟財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 환경을 하나의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때 환경자원 역시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예를 들어 異部門間 환경자원의 배분이 效率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했다면, 外部不經濟를 낳는 財貨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量 이상으로 생산되고 外部經濟性을 띤 財貨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어 사회 전체로도 效率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과 개발은 종종 언급되듯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補完의 관계이고」 또 이는 환경자원의 效率적 배분을 통해 달성된다는 원칙이 정립된다.

한편 完全市場體制下에서는 價格機構에 의해 자원의 最適配分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나 환경자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자원의 效率적 배분에 관한 論議는 곧 시장의 불완전성에 관한 연구가 된다.

2章에서는 환경자원에 대해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를 본다. 이는 곧 환경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보는 것이 된다. 한편 환경문제의 원인 진단 위에 가능한 해결책, 즉 환경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환경정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논의되는 경제학에서의 規準들이 3章에 소개된다. 4章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租稅, 補助金 등의 경제적 誘因策

과 費用便益分析이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소개된다. 5章에서는 환경문제 원인의 하나인 외부효과를 國土利用計劃에서 고려할 때 그 결과가 기존의 방식에 따른 경우와 어떠할지 確定的模型(deterministic model)을 설정해 비교해 보았다.

## 제 2장 경제학적 측면에서 본 환경오염의 원인

환경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경오염의 발생이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市場失敗(market failure)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사실 경제의 많은 문제들이 시장실패와 관련되어 발생하는데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類型의 시장실패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가 외부효과의 발생에 따른 시장실패이며, 둘째는 환경이 公共財(public goods)라는 점에 기인한 시장실패이고, 셋째는 미래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에 기인하는 바 2章에서는 이 세 類型의 시장실패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문제의 발생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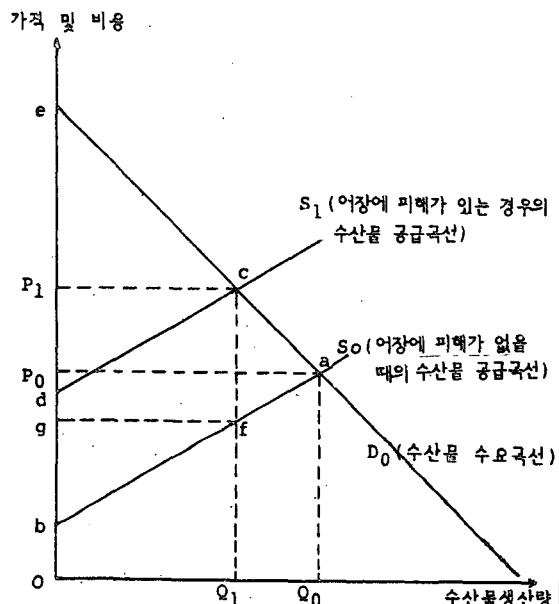
### 제 1절 外部效果와 市場失敗

환경자원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外部不經濟(external diseconomy) 概念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외부불경제는 하나의 경제 主體가 市場機構를 통하지 않고, 즉 맷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經濟主體에 不利益을 초래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불경제는 私的費用(private cost)과 社會的費用(social cost) 간의 피리를 초래하게 되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게 한다.<sup>19)</sup>

외부불경제로 인해 비효율적 資源配分이 초래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江上류에 위치한 제지공장이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共有財인 강에 배출하여 水質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제지공장측이 공장 가동으로 인한 주변 漁業生產에 대한 피해를 生產費用의 일부로 가정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私的費用은 사회적 비용, 즉 財貨를 생산하는데 직접 지출된 비용과 생산과정에서 다른 經濟主體에 미친 피해를 합한 비

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국민경제 전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생산비용에 포함되어 경제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그림을 이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I〉 외부 불경제와 자원배분

주변의 漁場에 전혀 피해가 없는 경우에 생산된 수산물의 供給曲線을  $S_0$ 로 표시하면 공장가동으로 인해서 주변의 어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산물의 供給曲線을  $S_1$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수산물의 需要曲線은  $D_0$ 이다. 위의 그림에서 피해전과 피해후의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를 비교해 보면 피해전과 후의 均衡價格, 均衡產出量, 社會的 잉여는 다음과 같다.

피해 전	피해 후
○ 균형 가격 : $P_0$	○ 균형 가격 : $P_1$
○ 균형 산출량 : $Q_0$	○ 균형 산출량 : $Q_1$
○ 잉여 : $bea$ 소비자잉여 : $ep_0a$ 생산자잉여 : $bp_0a$	○ 잉여 : $dec$ 소비자잉여 : $ep_1c$ 생산자잉여 : $dp_1c$
잉여의 변화 : $dec-bea = -bdca$	

위에서 피해후의 사회적 잉여는 피해 전보다 bdca만큼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bdca는 생산자, 소비자에게 보상될 額數를 합한 것인데 수산물 생산자와 수산물 소비자에게 각각 보상될 액수를 그림으로 분석해 보자. 剩餘變動額 bdca는  $S_0$  와  $S_1$ 이 평행하면  $gp_1caf$  와 면적이 동일하다.  $gp_1caf$ 에서 소비자잉여 感少分은  $p_0p_1ca$ ,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gp_0af$ 에 해당한다. 결국 제지공장측이 자신이 발생시킨 외부불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損益計算書에 기재되는 비용(私的費用)에만 의거해 조업을 한다면 bdca만큼 다른 경제주체(여기서는 수산물 생산자와 수산물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야기된다.

外部效果가 非效率性을 놓게 하는 원인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자원에 대해 財產權(property right)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탓에 외부효과의 시장이 존재치 않게 되고 행위자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sup>2)</sup> 그 결과 外部不經濟性을 띤 財貨의 過多供給과 외부경제성을 띤 財貨의 과다공급이 발생해 사회 전체로 볼 때 效率(efficiency)을 상실케 되는 것이다.

## 제 2절 公共財와 市場失敗

환경문제와 관련한 두번째의 시장 실패는 公共財(public goods)의 概念이다.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공공재는 한 소비자의 사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財貨와는 달리 공공재란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되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非排除性(non excludability)이 성립하고 또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소비에 있어서의 非競合性(nonrivalry in consumption)이 성립하는 財貨이다.<sup>3)</sup> 예를 들면 등대의 경우 등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배는 다른 배가 등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排除하지 않는다.

公共財의 非排除性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원인 때문일 수도 있으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다.<sup>4)</sup> 원칙적으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限界支拂用意의 총합이 限界生產費用과 일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支拂用意(willingness to pay)를 확인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는 그의 실질적 지불액이 그가 표현한 지불용의에 의거하여 부과된다면 지불용의를 축소하여 밀하려 할 것이고 결국 無償乘車者(free rider)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大氣質이나 水質과 같은 환경의 質 역시 이와 같은 共同消費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따라서 환경자원과 같은 公共財의 특성을 지닌 자원은 價格機構에 의해 자동적으로 最適配分이 달성되어 질 수 없으며 국가기관을 통한 集團的 行爲(collective action)를 필요로 한다.

## 제 3절 불완전한 정보와 市場失敗

우리가 미래와 불확실성의 존재를 고려할 때 완전시장 체계는 미래에 공급될 생산품의 시장과 모든 우발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高度로 발달된 保險市場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異時間 資源配分은 非効率的이 된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實世界는 불완전한 정보로 특징지워지기 때문이다. 미래시장과 적절한 危險負擔 시장의 不在는 필경 자연환경자원에 대해 異時間 不適正配分(intertemporal malallocation)을 야기시킨다. 즉 현재의 환경오염이 시간이 지나 자연에 축적됨에 따라 미래 자원의 質을 저하시키거나 심지어는 심각한 危害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完全市場體制의 결여로 인해 이러한 비용이 현재의 시장거래에서 감안되지 못한다. 이것이 환경정책이 필요한 세번째 이유이다.

## 제 3장 환경자원배분의 기준

앞에서 환경자원은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함을 보았다. 즉 환경자원

은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은 탓에 외부효과가 발생하며 그 결과 外部不經濟性을 띤 財貨가 과다 공급되거나 外部經濟性을 띤 재화가 過少供給되는 등의 자원의 最適配分에 실패를 초래하였다. 또한 환경자원이 갖는 公共財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 오염 방지 노력이 충분치 못하게 됨을 보았고, 미래 시장에 대한 정보의 不在로 인해 환경자원의 過多利用이 더욱 가중됨을 보았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원인 진단위에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환경을 이용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指針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능한 자원배분 방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경제학에서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파레토最適**(pareto optimality) 이고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補償原理와費用便益分析**이다. 아울러 社會厚生函數는 파레토最適點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지적해 준다.

#### 제 1절 **파레토最適條件과 社會厚生函數**

파레토 최적조건이란 한 경제의 여러 상태 중에서 어느 상태가 더 좋은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규準이다. 만일 여러가지 자원배분 방안 중에서 A방안에서 B방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나 적어도 한 사람은 利益을 볼 수 있다면 B방안은 A방안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한편 적어도 한 사람을 나쁘게 하지 않고는 어느 한 사람도 좋아질 수 없는 상태일 때 이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부른다.

不全競爭市場은 파레토 최적조건의 1차조건을 만족시킨다.<sup>5)</sup> 그러나 생산이나 소비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完全競爭市場이라도 파레토 최적의 1차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外部效果가 존재시 가격은 私的費用 대신 사회적 비용에 일치되어야 파레토 1차조건이 충족되게 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租稅나 補助金 등의 정책수단은 시장기능을 보완시켜 경제를 파레토 최적 상태로 이끌어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章으로 미룬다.

그러나 파레토 최적 조건의 치명적인 단점은

파레토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여러 代案들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최적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補完으로서 제시된 規準이 補償原理 및 社會厚生函數의 적용이다. 사회후생 함수란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합하여 사회적 選好를 나타내 주는 數學的 關係式으로서 파레토 最適點들 간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준다. 즉 總效用可能曲線과 社會無差別曲線이 접하는 상태일 때 사회후생은 極大化된다. 그러나 사회후생 함수는 그 존재가 아직 회의적인 상태로서 이론적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sup>6)</sup>

#### 제 2절 **보상원리와 비용편익분석**

파레토條件이 일부의 厚生增大가 다른 이들의 후생감소를 초래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는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선택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規準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規準은 일부의 후생증대와 다른 이들의 후생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現實의 많은 政策問題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현실의 정책 결정은 통상 누군가는 좋게 되고 반면 어떤 사람은 나쁘게 되도록 결정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정책은 의도적으로 직접 所得分配를 변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평가하려면 파레토條件 이외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칼도어」와 「 Hicks」의 補償原理이다.<sup>7)</sup>

이는 만일 A상태로부터 B상태로 이동할 때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損失者들을 補償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부유하게 될 수 있다면 B상태는 A상태보다 선호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 補償은 실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潛在의인 보상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본 이와 이득을 본 이가 있으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결국 이는 아무도 손해본 이는 없으나 누군가 이득을 본 이는 있다는 것이 되어 파레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명제에 입각하여 도출된 기법이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이다. 同分

析은 손해와 이득을 동시에 주는 현실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각 대안과 관련된 모든 결과를 찾아낸 후 이것을 비용과 편의로 구분하여 그 규모를 算定, 比較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이潛在的 利得(potential gain)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즉 잠

재적으로 약은 손실보다 얻은 이득이 더 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分析은 구성원간의 상반된 이해관계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석은 필연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1 弗의 손실을 충분히 相殺할 수 있다는 가치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8)</sup>

〈다음호에 계속〉

## 제5회 환경보전 사진 현상공모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국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진작품을 현상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아

래

응모부문	응모대상	응모요령 (규격)	응 모 내 용	시 상	
				구 분	상 금
사 진	제한없음	흑백 및 칼라사진 으로 11×14"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 모범사례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방지 노력현장</li> <li>- 오염방지시설 설치, 가동</li> <li>- 생태계 복원</li> </ul> </li> <li>* 환경오염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 물, 농경지등의 오염실태</li> <li>- 폐수 및 생활오수의 배출현장</li> </ul> </li> <li>* 기타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제도할 수 있는 내용</li> <li>※ 자세한 내용은 본 협회로 문의바람</li> </ul>	금상 : 1 점 은상 : 2 점 동상 : 3 점 가작 : 40점	500,000원 각 300,000원 각 150,000원 각 50,000 원

▲응모 마감 : 1987. 4. 30

▲입선작 발표 : 1987. 5. 15 (개별통지)

▲접수처 : (사) 환경보전협회총보부(TEL. 753-7669, 756-6141)

서울특별시 종로 남대문로 4가(대한상의빌딩내)

▲유의사항 : ● 배경 및 내용은 국내에 한함

- 작품수는 제한없음
- 원판필름 제출 및 판넬요
- 작품뒷면에 제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입.
- 작품의 촬영일자, 장소, 명제설명은 반드시 기재
- 입선된 작품은 본 협회에 귀속됨
- 낙선작은 87. 5. 16~5. 25기간에 반출하여야 하며 경과시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입선작은 1987. 5. 22~5. 26 대한무역진흥공사 전시장에서 전시 할 계획임

1987년 2월 일

주최 : 사단 法人 環境保全協會

후원 : 환경청

# 會員入會案內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规定에 依據設立된 本協會는 定款의 定한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會員入會를 권장하오니 아직도 參與하지 않고있는 방지시설업체 또는 배출업체는 빠짐없이 자진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會員의 資格

- 가. 環境管理技師會員 : 国家技術資格을 취득한 環境管理技師 1, 2 級 資格証所持者.
- 나. 排出業体会員 : 環境保全法 第15條의 规定에 依據 排出施設 設置許可를 받은 者.
- 다. 防止施設業會員 : 環境保全法 第47條의 规定에 依據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
- 라. 產業廢棄物處理業會員 : 環境保全法 第50條의 规定에 依據 廢棄物處理業許可를 받은 者.
- 마. 環境保全関聯事業會員 : 防止機器類(防止產品包含)製造 및 販売業者와 建設業조경 等  
其他 環境保全에 関聯된 事業体 또는 団體로서 理事会의 同意를 받은 者.
- 바. 特別會員 : 本會發展에 헌신한 공헌을 한 個人 또는 团體로서 理事会의 同意를 받은 者.
- 사. 名譽會員 : 社會指導層 人事.

## ●會員의 惠澤

- 가. 協会의 事業에서 얻은 調査研究 및 技術開發 結果를 利用 또는 活用할 수 있음.
- 나. 技術相談 提供
- 다. 海外 技術情報 提供
- 라. 技術教育 無料受講
- 마. 施工 設計, 研究調查 分析 評價 實費提供
- 바. 刊行物(環境保全協会報) 等 無料配付.

## ●入會節次

協会 所定様式의 入会願書를 提出하여 (入会費와 年会費를 同時納付하여야 함) 理事会의 同意를  
받음으로서 入会됨.

## ●會 費

區 分	入会費	年会費	區 分	入会費	年会費
特 別 会 員	10,000	15,000	防 止 施 設 業 會 員(上)	200,000	300,000
환경 관리 기사 회원	2,000	4,500	" (下)	100,000	150,000
排出業体会員(1種)	100,000	150,000	産 業 廢 弃 物 處 理 業 會 員	100,000	150,000
" (2種)	50,000	75,000	環境保全関聯事業會員	100,000	150,000
" (3種)	30,000	45,000			

## ●入會願書 接受處

- 서울 : 本会事務局(中区南大門路 4 街45대한상의) 753-7640, 753-7669
- 京畿 : 京畿道支部事務局(水原商工会議所内) 6-1175
- 江原 : 江原道支部事務局(春川商工会議所内) 52-4321
- 忠北 : 忠北道支部事務局(清州商工会議所内) 52-0025
- 忠南 : 忠南道支部事務局(大田商工会議所内) 253-9826
- 慶北 : 慶北·大邱支部事務局(大邱商工会議所内) 755-2933
- 慶南 : 慶南道支部事務局(馬山商工会議所内) 93-1888
- 全北 : 全北道支部事務局(全州商工会議所内) 6-3014
- 全南 : 全南道支部事務局(光州商工会議所内) 364-5600
- 釜山 : 釜山支部事務局(釜山商工会議所内) 463-7801~5
- 潤州 : 潤州道支部事務局(濟州商工会議所内) 23-2164
- 仁川 : 仁川支部事務局(仁川商工会議所内) 75-1840

社團 法人 環境保全協會

# 0의 社会

단국대학교 교수·정치학  
정 용 석

자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룰 때 개선이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뼈아프게 절감하는데서만이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책임감이 치솟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터이므로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후진성이나 사회적 부조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연유가 바로 그러한 책임소재의 전가에 있다.

## ■ 재수탓? 조상탓?

어린 아기가 재롱을 부리다 방바닥에 넘어져 운다. 그럴 때면 지켜보던 어머니나 할머니는 으레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두들겨 대며 방바닥을 꾸짖는다. 『이놈이 왜 우리 아가한테 그랬어. 이놈, 이놈』 아기가 넘어져 우는 것은 방바닥이 잘못했기 때문이므로 방바닥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른의 호들갑스러운 방바닥 꾸짖음에 울던 아기는 울음을 멈춘다.

우리나라 사람은 저렇게 어린 아기 때부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의식구조를 기르게 된다. 어린 아기가 넘어진 것은 분명히 그 아이의 잘못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애꿎은 방바닥에 책임을 묻는다.

자기 잘못의 책임을 자신이 통감하지 않고 방

바닥에 전가하며 성장해온 한국인은 어른이 되어서도 책임전가의 폐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업이 꼬이거나 승진이 안 될 때, 또는 하는 일이 뒤틀릴 때 대개 재수 탓을 하거나 조상탓을 한다. 또는 동료나 상사 아니면 주변 환경에 잘못된 책임을 돌리려 한다.

몸에 밴 책임전가 의식은 요즘 폭발적전으로 치닫는 듯한 우리 정국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가 왜 저 꼴이야!』하고 분노한다. 『밥처먹고 고작 저런 짓이나!』고함을 터뜨리기도 한다.

글줄이나 읽어 유식한척 하는 사람은 제법 논리적인 표현을 구사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제를 비롯 모든 분야는 6·25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유독 정치부분만 낙후하였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임에는 틀림없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주판 대신 컴퓨터를 두들겨대고 있는 판국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구태의연하게도 본회의장 아닌 「별관」에서 의안을 통과시키고 원색적인 발언이나 멱살을 틀어쥐기 일쑤다. 한심스럽기 그지 없는 작태이다.

여당과 야당 사람들이 각각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 여당쪽에서는 야당 측이 돼먹지 않았고 야당측에서는 여당 측이 혼자 말아먹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맞선다. 이렇게 우리 국민은 책임소재를 서로 전가한다. 일반국민은 정치인에게 돌리고 정치인은 서로 여와 야에 전가한다. 그러